



# 2019년 연금세제 개편의 내용 및 평가

강성호 연구위원, 류건식 선임연구위원

- 정부는 가입단계(ISA의 연금계좌 전환,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)에서 추가적 세액공제를, 수급단계(퇴직금의 연금화 유도)에서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연금세제 개편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함
  - 2020년부터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 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함
  -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(연간 최대 200만 원)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
  -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현행 퇴직소득세의 70%로 과세하던 것을,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%로 감면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함
  
- 소득세법 개정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기대 수준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
  - ISA계좌의 전환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(현행 대비 75.5% 증가)이고,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6만 원(현행 대비 16.2% 증가)으로 추정됨
  -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(현행 대비 49.1% 증가)이고, 실태를 고려하면 평균 13만 원(현행 대비 29.5% 증가)으로 추정됨
  -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추가적 세제혜택(퇴직소득세 감면 효과)은 현행 대비 33% 수준이나 추정된 세제혜택은 3.7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
  
-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세제혜택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
  -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
  -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추가세액 공제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  - 연금화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퇴직금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참여자 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
## 1. 검토배경



- 정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함
  - 소득세법 개정안은 7월 26일~8월 1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될 계획임
  - 연금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은 ‘ISA<sup>1)</sup>(개인종합자산관리)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허용’, ‘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제공’, ‘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’ 등임
- 연금세제 지원 확대 배경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
  -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<sup>2)</sup>, 기대여명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<sup>3)</sup> 과거보다 강화된 노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
  -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가입단계(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로 전환 등) 및 수급단계(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세제지원 강화 등)에서 세제혜택을 확대함<sup>4)</sup>
- 본고는 2019년에 개편안으로 제시된 연금세제 지원 내용 및 세제지원의 개선효과 등을 평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  - 연금세제 지원 시 어느 정도의 소득개선 효과(연금재원 형성 정도)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

1) <https://md2biz.tistory.com/365>;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6. 3. 11), “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‘국민통장’ ISA 출시”

2) 과거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18년 혹은 2019년으로 추계된 바 있음(통계청)

3) 과거 40여 년 동안 기대수명(0세 기준 기대여명)은 연간 0.45세 증가하여 왔음

4) Verbon, Harrie(2012), “The Evolu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”, Springer

## 2. 연금소득세의 개편 내용 및 적용대상



### 가. 개편 내용

- (ISA의 연금계좌 전환) 2020년부터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 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함

- 현행 연금계좌의 납부액 상한은 연간 1,800만 원이나 만기된 ISA계좌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(이하, '전환금')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함
- 공제대상액 한도는 400만 원(IRP 포함 시 700만 원)<sup>6)</sup>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(IRP 포함 시 1,000만 원)으로 개정됨
  - 다만, 전환금이 3천만 원(공제대상액 300만 원) 이하인 경우 전환금의 10%가 공제대상 금액이 됨

〈표 1〉 ISA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에 따른 연금세제 변화

현행	현행	개정안
납입한도	연 1,800만 원	연 1,800만 원 +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
공제대상액 한도	연금저축 연 400만 원 (IRP 포함 시 연 700만 원)	연금저축 연 400만 원(IRP 포함 시 연 700만 원) +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% (300만 원 한도)
세액공제율	5천 5백만 원 이상 13.2%, 5천 5백만 원 이하 16.5%	

주: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19. 7. 25), "2019년 세법개정안"

- (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)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납입을 허용하여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함

- 50세 이상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 가능해 최대 600만 원(IRP 포함 시 900만 원)이 연금세제 공제대상 금액이 됨
  - 다만 50세 이하 자, 총급여 1.2억 원(종합소득금액 1억 원) 초과자,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<sup>7)</sup>)는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함

5) 연금계좌는 연금저축(개인연금계좌)과 개인형 IRP(퇴직연금계좌)가 있으며, 납부보험료에 세액공제(공제대상액×세액공제율)를, 연금소득에 연금세제(세율 3~5%)를 적용함

6) 공제대상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공제대상은 아니나 급여 발생 시 연금세제가 적용됨. 즉, 연금세제가 적용되는 최대 납부액은 연간 1,800만 원임

7) 2,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6.6~41.8%(<http://isa.kofia.or.kr/>)

〈표 2〉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세제 공제대상액 한도 확대

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	현행	개정	세액공제율
5.5천만 원(4천만 원) 이하	400만 원(700만 원)	600만 원(900만 원)	15%
1.2억 원(1억 원) 이하			12%
1.2억 원(1억 원) 초과	300만 원(700만 원)		

주: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19. 7. 25), “2019년 세법개정안”

- 미국과 호주의 중고령자 추가납부제도(Catch-up Plan)는 소득공제 방식이고 매년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방식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존재함
  -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 가입자는 연간 \$6,000까지, 퇴직(65세) 前 가입자는 65세 이전 3년 이내에 \$36,000까지 납부함<sup>8)</sup>
  - 호주의 경우 50세 이상 가입자는 \$35,000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, 적립액이 \$500,000<sup>9)</sup> 이하 이면서 연간 한도인 \$25,000를 채우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가 가능함<sup>10)</sup>

■ (퇴직금의 연금화 유도)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함

-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현행(퇴직소득세의 70%)과 동일하나,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%로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함(10%p 절세 효과)

〈표 3〉 이연퇴직소득<sup>1)</sup>(퇴직금)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

현행	개정
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% *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(종합소득세 대상 아님)	연금수령시점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%를 적용(10년 이하이면 현행과 동일)

주: 1)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

2)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19. 7. 25), “2019년 세법개정안”

8) [https://www.nrsforu.com/iApp/tcm/nrsforu/learning/library/irs\\_rules.jsp](https://www.nrsforu.com/iApp/tcm/nrsforu/learning/library/irs_rules.jsp); 추가 사항은 강성호(2016), 『KiRi Weekly』, 보험연구원 참고

9) 호주 달러 기준임(이하 동일). 2016년 9월 7일 기준 840.63원임

10) Budget Submission 2016-2017, SMSF Association(Australia); [https://www.australiansuper.com/campaigns/federal\\_budget\\_2016](https://www.australiansuper.com/campaigns/federal_budget_2016)

## 나. 적용 대상

■ (ISA 현황) ISA가 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경과한 현재(19년 6월 말) ISA의 총가입자 수는 214만 명이고, 총적립금은 6조 1,509억 원(1인당 288만 원)임

- ISA는 기존의 비과세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, 5년(서민형 3년)간 납입의무 기간을 설정함
  - 만기 시 순이익의 200만 원(서민형은 400만 원)은 비과세되며,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의 분리과세를 적용함<sup>1)</sup>
- ISA계좌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며(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), 가입자 수(적립금) 기준으로 신탁형이 전체의 88.2%(88.5%)로 대부분을 차지함

〈표 4〉 업권별 ISA가입 현황(2019년 6월 말 기준)

가입자 수(천 명)			적립금(억 원)		
신탁형ISA	일임형ISA	전체	신탁형ISA	일임형ISA	전체
1,887 (88.2%)	252 (11.8%)	2,139 (100.0%)	54,458 (88.5%)	7,051 (11.5%)	61,509 (100.0%)
					〈288만 원〉

주: 1) ( )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

2) < >안은 1인당 적립금임

자료: 금융투자협회/ISA다모아

■ (연금계좌 현황) 2017년 말 연금계좌 공제대상자는 251만 명이며, 공제대상액은 6조 9,940억 원(1인당 279만 원), 세액공제액은 8,820억 원(1인당 35만 원)으로 나타남

- 이번 개정안의 주요 수혜자인 50세 이상 가입 비중은 28.3%, 공제대상액은 2조 3천 860억 원(1인당 336만 원), 세액공제액은 2천 950억 원(1인당 42만 원)임

〈표 5〉 연령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현황(2017년 귀속분)

구분	대상자(천 명)		공제대상액(십억 원)	세액공제액(십억 원)
전체	2,506	-	6,994 〈279만 원〉	882 〈35만 원〉
50세 미만	1,796	(71.7%)	4,608 〈257만 원〉	587 〈33만 원〉
50세 이상	710	(28.3%)	2,386 〈336만 원〉	295 〈42만 원〉

주: 1) IRP 및 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한 것임

2) ( )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

3) < >안은 1인당 적립금임

자료: 국세청(2019), 2018 국세통계연보(4-2-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\_성, 연령)

11) <https://md2biz.tistory.com/365>;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6. 3. 11), “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‘국민통장’ ISA 출시”

- (퇴직금 현황) 퇴직소득 징수 여부 기준으로 2017년 퇴직자 수는 267만 명이며, 퇴직급여액은 35조 원(1인당 1,308만 원), 퇴직소득세는 1조 2,940억 원(1인당 49만 원)으로 나타남
-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금화로 전환한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금인 이연퇴직소득세는 2017년 기준 6,800억 원(1인당 26만 원)임
  - 1인당 퇴직소득세는 퇴직자 전체(이연퇴직 세제혜택 없는 자 포함)를 대상으로 할 경우 49만 원이며, 연금수령을 신청한 퇴직자(이연퇴직소득자)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7.1만 원임

〈표 6〉 연도별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

구분 <sup>1)</sup>	퇴직자 수 (천 명)	퇴직급여 (십억 원)	퇴직소득세 (십억 원)	이연퇴직소득세 <sup>2)</sup> (십억 원)
전체	2,669	34,906	1,294	680
1인당	-	1,308만 원	49만 원(37.1만 원)	26만 원

주: 1) 퇴직급여액을 10분위로 구분할 때 상위 10%와 나머지 90%로 구분한 것임  
 2)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자 중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됨  
 3) ( )안은 세제혜택을 받은 이연퇴직소득자만 대상으로 하여 산출할 경우의 퇴직소득세임  
 자료: 국세청(2019), 2018 국세통계연보(4-4-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Ⅲ\_10분위, 성, 연령)

### 3. 연금소득세 개편의 세제효과 및 평가



#### 가. ISA의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추가적 세제효과

- ISA계좌의 전환금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40만 원(현행 대비 75.5% 증가), ISA 가입 현황을 고려한 평균적 세액공제 효과는 6만 원(현행 대비 16.2% 증가)으로 추정됨
  - (제도 반영) ISA계좌 전환금의 공제대상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추가적 세제혜택은 제도상 최고 40만 원임(〈표 7〉 참조)
    - 추가적 세제혜택 40만 원은 연금세제 개편으로 75.5% 증가한 수준임
  - (실태 반영) 실태를 고려한 ISA계좌의 전환 가능 금액은 436만 원으로 추정되고, 동 금액의 10%인 43.6만 원은 300만 원보다 적으므로 동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어 추가적 세제혜택은 6만 원임
    - 추가적 세제혜택 6만 원은 연금세제 개편으로 16.2% 증가한 수준으로 제도상 효과와 격차가 큼
- ISA의 연금계좌 전환 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유지 기간인 5년에 1번 발생하고 제도와 실태 간

세제혜택의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

- ISA계좌는 5년 의무가입을 하고 있고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좌만기 후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5년에 1번씩 세제혜택이 제공되고, 제도와 실태 간 세제혜택의 격차가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

〈표 7〉 ISA의 연금계좌 전환에 따른 효과

구분	제도 최고 금액 기준(예시)		평균 가입액 기준	
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연금계좌 납입액(A) <sup>1)</sup>	1,800만 원	6,800만 원 (1,800만 원+전환금 5,000만 원)	279만 원	715만 원 (279만 원+전환금 436만 원 <sup>5)</sup> )
공제대상 금액(B) <sup>2)</sup>	400만 원	700만 원 (400만 원+추가 300만 원)	279만 원	323만 원 (279만 원+추가 43.6만 원)
세제혜택 금액(C) <sup>3)</sup>	53만 원 (400만 원×13.2%)	93만 원 (53만 원+추가 40만 원)	37만 원 (279만 원×13.2%)	43만 원 (37만 원+추가 6만 원)
추가 세제효과(D) <sup>4)</sup>	- 추가 세액공제액: 40만 원=추가 300만 원×13.2% (93만 원-53만 원) - 현행 대비 증가율: 75.5%(40만 원/53만 원)	- 추가 세액공제액: 6만 원=추가 43.6만 원×13.2% (43만 원-37만 원) - 현행 대비 증가율: 16.2%(6만 원/37만 원)		

주: 1) 현행 제도상 연간 최고 납부가능액은 1,800만 원이나, 여기에 추가적으로 ISA 전환금이 5천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
 2) 연금저축 기준으로 최고 공제대상 금액을 설정한 것이며, 여기에 추가적 공제대상액은 전환금의 10%(300만 원 상한)임  
 3) 공제대상 금액×세액공제율(13.2%)로 산출  
 4) 개정안의 세액공제 금액-현행 세액공제 금액으로 산출  
 5) 436만 원은 현행 ISA계좌 1인당 적립액이 288만 원(3.3년 시행 기준)을 5년 동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추정 값

나.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세제효과

■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제도상 최고 26만 원, 현행 연금계좌 가입 현황을 고려한 평균적 세액공제 효과는 13만 원으로 추정됨

- (제도 반영) 50세 이상인 가입자가 추가로 허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200만 원이므로 여기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추가적 세제혜택은 최고 26만 원으로 현행 대비 49.1% 증가함
- (실태 반영) 연금계좌의 실태를 고려할 때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납부액은 96만 원<sup>12)</sup>으로 추정되며, 동 금액 전액이 세제혜택 대상이므로 추가적 세제혜택은 13만 원으로 현행 대비 29.5% 증가함
- 제도상 최고 세제혜택과 실태를 반영한 세제혜택 간 격차가 존재함

12)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 1인당 적립액은 336만 원(2017년 기준)으로 이는 공제대상 최고 금액(700만 원)의 48% 수준임. 동 비율 만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가정하면, 추가 공제대상 최고 금액(200만 원)에 48% 수준은 96만 원으로 추정됨

〈표 8〉 중고령자(50세 이상)의 납입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

구분	제도 최고 금액 기준(예시)		평균 가입액 기준	
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연금계좌 납입액(A) <sup>1)</sup>	1,800만 원		336만 원	432만 원 (336만 원+추가 96만 원 <sup>5)</sup> )
공제대상 금액(B) <sup>2)</sup>	400만 원	600만 원 (400만 원+추가 200만 원)	336만 원	432만 원 (336만 원+추가 96만 원 <sup>5)</sup> )
세제혜택 금액(C) <sup>3)</sup>	53만 원 (400만 원×13.2%)	79만 원 (53만 원+추가 26만 원)	44만 원 (336만 원×13.2%)	57만 원 (44만 원+추가 13만 원)
추가 세제효과(D) <sup>4)</sup>	- 추가 세액공제액: 26만 원=추가 200만 원 ×13.2% (79만 원-53만 원) - 현행 대비 증가율: 49.1%(26만 원/53만 원)		- 추가 세액공제액: 13만 원=추가 96만 원×13.2% (57만 원-44만 원) - 현행 대비 증가율: 29.5%(13만 원/44만 원)	

주: 1) 현행 제도상 연간 최고 납부가능액은 1,800만 원으로 개정안도 동일함  
 2) 여기서는 연금저축 기준으로 최고 공제대상 금액을 설정한 것임. IRP를 포함하면 공제대상 금액은 현행 700만 원, 개정안 900만 원이 됨  
 3) 공제대상 금액×세액공제율(13.2%)로 산출  
 4) 개정안의 세액공제 금액-현행 세액공제 금액으로 산출  
 5)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 1인당 적립액은 336만 원으로 이는 공제대상 최고 금액(700만 원)의 48% 수준임. 동 비율만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보면, 추가 공제대상 최고 금액(200만 원)에 48% 수준은 96만 원으로 추정됨

- 중고령자(50세 이상)에 대한 추가적 세액공제 적용은 3년간(2020년 1월-2022년 12월)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미국, 캐나다의 '중고령자 추가납부제도(Catch-up Plan)'과 차이가 있음

#### 다.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효과

-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현행 대비 10%p 퇴직소득세 감면효과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 세제혜택은 퇴직소득세가 많을수록 절대적 규모의 세제혜택은 증가함
  - 개정안 및 현행의 이연퇴직소득세의 세제혜택은 각각 퇴직소득세의 40%, 30% 수준이므로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은 10%p로 세제혜택 증가율은 33.3%<sup>13)</sup>임
- 1인당 이연퇴직소득세 26만 원을 반영한 퇴직소득세 감면효과(세제효과)는 3.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
  -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%가 적용된 금액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퇴직소득세는 37.1만 원으로 추정됨
  - 추정된 퇴직소득세는 37.1만 원에 10%p 세제혜택이 발생하면 3.7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, 이는 현행 세제혜택인 11.1만 원의 33.3% 수준이 됨

13) 추가적 세제혜택은 퇴직소득세의 10% 만큼 증가하므로 현행 세제혜택 금액인 퇴직소득세의 30%와 비교할 때 33.3%임

〈표 9〉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에 따른 효과

구분	현행	개정안
수령시점 10년 이하	- 퇴직소득세=26만 원×100/70=37.1만 원	좌동
수령시점 10년 이상	- 세제혜택: 11.1만 원(37.1만 원-26만 원)	- 퇴직소득세=37.1만 원×60%=22.3만 원 - 세제혜택: 14.9만 원(37.1만 원-22.3만 원)
추가 세제효과(D) <sup>1)</sup>	- 추가 세제혜택: 3.7만 원=14.9만 원-11.1만 원 - 현행 대비 증가율: 33.3%(3.7만 원/11.1만 원)	

주: 1) 개정안의 세제혜택 금액-현행 세제혜택 금액으로 산출

-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세제혜택 효과는 앞의 ISA의 연금계좌 전환 효과와 마찬가지로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애기간 동안 1번 발생하는 단발성 효과임
  - 또한 이연퇴직소득을 신청한 규모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액 대비 연금퇴직소득세로 가늠해 보면, 52.6%(6,800억 원/1조 2,940억 원)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, 이중 수령시점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

## 4. 정책적 시사점

-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SA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, 중고령자의 납입한도 상향조정 등 소득세법 개정은 추가 세액공제 및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가져와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도와 현실 간 세제혜택의 괴리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
  - ISA의 연금계좌 전환은 6만 원(현행 대비 16.2% 증가), 중고령자 납입한도 상향은 13만 원(현행 대비 29.5% 증가)의 추가 세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됨
  - 또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1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현재보다 30% 이상의 추가 세제혜택이 기대됨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적 세액공제 적용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함
  -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 규모, 지원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연금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
- 첫째,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에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환 시 세액공제

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됨

- ISA의 계좌 전환은 매년 전환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만기 시 1번(5년마다 1번) 전환되므로 지속적인 노후자산 증식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임
- 300만 원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공제대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

■ 둘째,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추가세액 공제기간을 폐지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

- 중고령자에 대한 추가적 세액공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 등과 같은 중고령자 추가납부제도(Catch-up Plan)와 차이가 존재함
- 추가적인 세액공제 한도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

■ 셋째, 연금화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퇴직금 수령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참여자 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
- 퇴직금의 연금화 유도의 취지는 좋으나 현재 연금 수령이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추가적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**kiri**